

문 14) 국가 보안법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사례수	P14			
		① 국가의 안전을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도모	② 사회전반의 이데올로기 통제수단의 도구	③ 정권안보 및 정권유지의 도구	④ 기타
		x	x	x	x
■ 전체	(237)	4.6	32.5	59.1	3.8
□ 장르 별					
출판 예술	(54)	1.9	37.0	55.6	5.6
시각 예술	(59)	6.8	39.0	54.2	.0
영상 예술	(25)	.0	28.0	60.0	12.0
공연 예술	(98)	6.1	27.6	63.3	3.1
□ 연령 별					
20대	(82)	7.3	34.1	52.4	6.1
30대	(91)	4.4	33.0	58.2	4.4
40대	(44)	2.3	31.8	65.9	.0
50대 이상	(19)	.0	26.3	73.7	.0
□ 성별					
남자	(150)	5.3	29.3	61.3	4.0
여자	(83)	3.6	38.6	54.2	3.6
□ 창작 기간					
5년 이하	(62)	1.6	32.3	61.3	4.8
5년 이상	(67)	6.0	35.8	52.2	6.0
10년 이상	(67)	7.5	29.9	59.7	3.0
20년 이상	(39)	2.6	30.8	66.7	.0

문 15) 위 법 2조에게 규정하는 <반국가단체> 및 7조 <반국가활동> 혐의로 인해 통일 및 사회개혁활동은 이제까지 자주 통제되어 왔습니다. 1980년에서 1987년까지 국가보안법 피소자 1,565명 중 피소자는 1,495명으로 전체 95.5%에 이릅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도 전체 국가보안법 피소자 중 7조 피소자는 90%를 넘을 정도로 7조는 국가보안법의 핵심적인 조항이며 특히 7조 5항은 예술인에게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국가보안법 적용이 국가안전을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P15	
		① 예	② 아니오
		x	x
■ 전체	(249)	94.4	5.6
□ 장르 별			
출판 예술	(57)	98.2	1.8
시각 예술	(56)	92.9	7.1
영상 예술	(28)	96.4	3.6
공연 예술	(106)	92.5	7.5
□ 연령 별			
20대	(85)	94.1	5.9
30대	(98)	92.9	7.1
40대	(49)	98.0	2.0
50대 이상	(16)	93.8	6.3
□ 성별			
남자	(158)	94.9	5.1
여자	(88)	93.2	6.8
□ 창작 기간			
5년 이하	(70)	94.3	5.7
5년 이상	(71)	95.8	4.2
10년 이상	(67)	91.0	9.0
20년 이상	(38)	97.4	2.6

문 16) 귀하는 국가보안법 중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P16			
		① 전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2조 반국가단체 정의의 모호함	③ 7조	④ 법조항 전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	%	%	%
■ 전체	(248)	2.4	12.5	34.3	50.8
□ 장르별					
출판 예술	(56)	.0	10.7	41.1	48.2
시각 예술	(61)	4.9	14.8	39.3	41.0
영상 예술	(28)	.0	14.3	32.1	53.6
공연 예술	(102)	2.9	11.8	28.4	56.9
□ 연령별					
20대	(88)	1.1	19.3	30.7	48.9
30대	(93)	5.4	11.8	25.8	57.0
40대	(46)	.0	4.3	56.5	39.1
50대 이상	(20)	.0	5.0	40.0	55.0
□ 성별					
남자	(156)	2.6	12.2	35.3	50.0
여자	(89)	2.2	12.4	33.7	51.7
□ 창작기간					
5년 이하	(70)	1.4	15.7	24.3	58.6
5년 이상	(67)	4.5	10.4	37.3	47.8
10년 이상	(67)	3.0	17.9	31.3	47.8
20년 이상	(42)	.0	2.4	50.0	47.6

문 16-1) 7조에 해당하는 항목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사례수	P16R1			
		① 7조1항의 찬양 고무	② 3항의이 적단체구성 가입	③ 5항의이 적표현물제작등의 죄	④ 7조의모 든 조항
		%	%	%	%
■ 전체	(44)	9.1	11.4	65.9	13.6
□ 장르별					
출판 예술	(13)	15.4	15.4	69.2	.0
시각 예술	(10)	10.0	.0	60.0	30.0
영상 예술	(7)	.0	.0	100.0	.0
공연 예술	(14)	7.1	21.4	50.0	21.4
□ 연령별					
20대	(16)	12.5	12.5	68.8	6.3
30대	(11)	9.1	18.2	54.5	18.2
40대	(12)	.0	8.3	75.0	16.7
50대 이상	(5)	20.0	.0	60.0	20.0
□ 성별					
남자	(27)	3.7	7.4	77.8	11.1
여자	(17)	17.6	17.6	47.1	17.6
□ 창작기간					
5년 이하	(11)	18.2	18.2	63.6	.0
5년 이상	(12)	8.3	16.7	50.0	25.0
10년 이상	(8)	.0	12.5	75.0	12.5
20년 이상	(12)	8.3	.0	75.0	16.7

문 17) 귀하는 국가보안법 개정 논란과 관련하여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P17			
		① 전면철폐	② 2조, 7조 10조 등 부분개정	③ 표현의자 유를 침해하 고 있는 핵심 적인 조항인	④ 현행유지
		%	%	%	%
■ 전 체	(254)	73.6	10.6	15.0	.8
□ 장 르 별					
출판 예술	(55)	76.4	7.3	16.4	.0
시각 예술	(63)	81.0	7.9	9.5	1.6
영상 예술	(28)	82.1	14.3	3.6	.0
공연 예술	(106)	66.0	13.2	19.8	.9
□ 연 령 별					
20 대	(85)	60.0	12.9	27.1	.0
30 대	(99)	81.8	10.1	7.1	1.0
40 대	(51)	80.4	7.8	9.8	2.0
50대 이상	(18)	77.8	11.1	11.1	.0
□ 성 별					
남 자	(161)	76.4	9.9	13.0	.6
여 자	(89)	68.5	12.4	18.0	1.1
□ 창 작 기 간					
5년 이하	(70)	70.0	12.9	17.1	.0
5년 이상	(70)	72.9	8.6	17.1	1.4
10년 이상	(69)	75.4	11.6	11.6	1.4
20년 이상	(42)	78.6	9.5	11.9	.0

문 18)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아직 이렇다할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P18			
		① 반국가 단체로부터 국가의 안전 을 도모하기 위해	② 보수세력 을 의식한 각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③ 국가 보안법이 인권침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④ 기타
		%	%	%	%
■ 전 체	(254)	2.0	90.9	1.2	5.9
□ 장 르 별					
출판 예술	(59)	.0	83.1	1.7	15.3
시각 예술	(63)	4.8	92.1	.0	3.2
영상 예술	(28)	3.6	89.3	3.6	3.6
공연 예술	(103)	1.0	95.1	1.0	2.9
□ 연 령 별					
20 대	(84)	2.4	88.1	2.4	7.1
30 대	(99)	2.0	89.9	1.0	7.1
40 대	(50)	2.0	94.0	.0	4.0
50대 이상	(20)	.0	100.0	.0	.0
□ 성 별					
남 자	(160)	.0	91.3	1.9	6.9
여 자	(90)	5.6	90.0	.0	4.4
□ 창 작 기 간					
5년 이하	(69)	4.3	85.5	1.4	8.7
5년 이상	(68)	1.5	91.2	.0	7.4
10년 이상	(71)	1.4	94.4	1.4	2.8
20년 이상	(44)	.0	93.2	2.3	4.5

■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질문

문 19) 97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유해한 매체나 장소, 물건 등을 고시하여 차단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나 유해장소임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하는 청소년보호법이 규제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①+②	③+④	③적절하지 못하다	④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	%	%	%	%	%
■ 전 체	(250)	3.6	24.4	28.0	72.0	54.0	18.0
□ 장 르 별							
출판예슬	(57)	3.5	26.3	29.8	70.2	47.4	22.8
시각예슬	(58)	1.7	29.3	31.0	69.0	53.4	15.5
영상예슬	(30)	3.3	6.7	10.0	90.0	43.3	46.7
공연예슬	(103)	4.9	26.2	31.1	68.9	60.2	8.7
□ 연 령 별							
20대	(86)	3.5	17.4	20.9	79.1	64.0	15.1
30대	(98)	4.1	28.6	32.7	67.3	44.9	22.4
40대	(48)	4.2	18.8	22.9	77.1	58.3	18.8
50대 이상	(17)	.0	52.9	52.9	47.1	41.2	5.9
□ 성 별							
남자	(160)	4.4	25.6	30.0	70.0	48.8	21.3
여자	(87)	2.3	21.8	24.1	75.9	63.2	12.6
□ 창작 기간							
5년 이하	(72)	4.2	16.7	20.8	79.2	61.1	18.1
5년 이상	(66)	3.0	28.8	31.8	68.2	50.0	18.2
10년 이상	(68)	4.4	23.5	27.9	72.1	55.9	16.2
20년 이상	(41)	2.4	34.1	36.6	63.4	41.5	22.0

문 20) 청소년보호법에서의 매체 규제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례수	P20			
		①청소년보호법명분으로 표현의자유를 침해하고있기때문	②유해매체심의기준이 잘못되었기때문	③심의기준은문제없지만심의하는과정에서문제가되기때문	④기존매체심의기관으로충분히심의할수있기때문
		%	%	%	%
■ 전 체	(158)	60.8	27.2	5.1	7.0
□ 장 르 별					
출판예슬	(36)	61.1	30.6	2.8	5.6
시각예슬	(36)	63.9	27.8	.0	8.3
영상예슬	(26)	80.8	11.5	3.8	3.8
공연예슬	(58)	50.0	31.0	10.3	8.6
□ 연 령 별					
20대	(58)	50.0	37.9	8.6	3.4
30대	(59)	74.6	18.6	3.4	3.4
40대	(34)	58.8	20.6	2.9	17.6
50대 이상	(6)	50.0	33.3	.0	16.7
□ 성 별					
남자	(97)	58.8	25.8	5.2	10.3
여자	(59)	66.1	27.1	5.1	1.7
□ 창작 기간					
5년 이하	(49)	55.1	32.7	10.2	2.0
5년 이상	(39)	69.2	20.5	2.6	7.7
10년 이상	(44)	63.6	22.7	4.5	9.1
20년 이상	(23)	55.5	30.4	.0	13.0

문 21) 다음은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입니다. 귀하께서 보시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은 어떤 것입니까?

중복응답 분석 - 모두 선택 (5개까지) 가능

	사례수	①청소년	②청소년	③성폭력을	④청소년의	⑤기타청소년
		에게성적인 욕구를자극 하는선정적 인것이거나 음란한 것	에게포악성 이나범죄적 충동일일 킬수있는것	포함한각종 형태의폭력 행사와악물 의남용을자 극하거나미 화하는 것	건전한인격 과시민의식 의형성을저 해하는반사 회적, 비윤 리적인 것	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 에명백히해 를끼킬우려 가 있는 것
		%	%	%	%	%
■ 전체	(227)	40.1	32.2	30.0	70.0	45.4
□ 장르 별						
출판 예술	(56)	44.6	30.4	28.6	64.3	39.3
시각 예술	(54)	51.9	33.3	20.4	74.1	37.0
영상 예술	(25)	48.0	48.0	40.0	80.0	60.0
공연 예술	(90)	27.8	27.8	32.2	67.8	50.0
□ 연령 별						
20대	(80)	32.5	33.8	36.3	66.3	46.3
30대	(87)	42.5	36.8	31.0	71.3	44.8
40대	(42)	47.6	21.4	14.3	81.0	45.2
50대 이상	(17)	41.2	23.5	29.4	52.9	41.2
□ 성별						
남자	(148)	37.8	33.8	32.4	68.2	42.6
여자	(77)	44.2	28.6	24.7	72.7	49.4
□ 창작 기간						
5년 이하	(63)	31.7	42.9	36.5	71.4	49.2
5년 이상	(59)	52.5	32.2	33.9	67.8	35.6
10년 이상	(65)	35.4	21.5	18.5	76.9	53.8
20년 이상	(37)	43.2	32.4	27.0	59.5	37.8

문22) 청소년보호법의 심의기준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중복응답 분석 - 3개 선택

	사례수	①심의기준 이너무추상 적이다	②심의기준 이지나치게 보수적이다	③음란물만 이 아니라 사회비판적 내용도규제 하고 있다	④성인규제 의 기준과 크게다르지 않다
		%	%	%	%
■ 전체	(244)	48.4	34.4	31.1	4.1
□ 장르 별					
출판 예술	(58)	44.8	31.0	39.7	1.7
시각 예술	(55)	52.7	32.7	25.5	3.6
영상 예술	(30)	40.0	43.3	33.3	10.0
공연 예술	(99)	49.5	34.3	28.3	4.0
□ 연령 별					
20대	(85)	56.5	34.1	23.5	5.9
30대	(94)	46.8	33.0	38.3	2.1
40대	(46)	45.7	32.6	37.0	2.2
50대 이상	(18)	22.2	50.0	16.7	11.1
□ 성별					
남자	(157)	46.5	35.7	29.3	4.5
여자	(85)	51.8	31.8	35.3	3.5
□ 창작 기간					
5년 이하	(70)	52.9	34.3	30.0	5.7
5년 이상	(63)	47.6	33.3	30.2	3.2
10년 이상	(68)	52.9	30.9	32.4	1.5
20년 이상	(40)	30.0	42.5	32.5	7.5

문 23)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별심의 기준입니다. 귀하께서 보시기에
 가장 부적합하다고 보는 조항은 어떤 것입니까?
 이항목이 12개 항목이므로 분석 - 모두 선택 (12개까지) 가능

사례수	① 음란한 자태나 치례모사한 것	② 성행위 관련 그릇된 언동이나 치례모사한 것	③ 수간음모사하거나 혼음/상동/성예/가학/피해음란 등 변태성행위, 대준행위 기타 사회풍년용상하지아니한성행위 관련 조항하는 것	④ 청소년으로 상동/성예/가학/피해음란 등 변태성행위, 대준행위 기타 사회풍년용상하지아니한성행위 관련 조항하는 것	⑤ 존속예상해/성인용적용을 위하는 것	⑥ 잔인/폭력/고문적 요소가 있는 것	⑦ 성력/자살/학행위/타정/학대/대화조항하는 것	⑧ 범죄행위나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것	⑨ 역사적/문화적/사회적/종교적/정치적/경제적/교육적/과학적/기술적/예술적/체육적/문화적/기타의 가치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⑩ 저속/언어나 행위를 치욕하는 것	⑪ 도박/과사행/심조장/안정성/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⑫ 청소년유해물등의 유통/제조/판매/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전 체 (210)	40.0	33.8	29.5	28.1	21.9	23.3	24.3	27.1	56.2	44.8	24.8	14.8
□ 장 르 별												
출판예슬 (49)	38.8	38.8	28.6	34.7	22.4	26.5	24.5	20.4	57.1	53.1	24.5	14.3
시각예슬 (46)	52.2	32.6	23.9	19.6	17.4	23.9	23.9	28.3	54.3	45.7	23.9	15.2
영상예슬 (27)	55.6	55.6	55.6	37.0	37.0	51.9	48.1	40.7	55.6	59.3	40.7	25.9
공연예슬 (86)	29.1	24.4	24.4	24.4	18.6	11.6	16.3	25.6	55.8	34.9	19.8	10.5
□ 연 령 별												
20 대 (74)	33.8	29.7	33.8	32.4	27.0	35.1	32.4	24.3	43.2	40.5	25.7	13.5
30 대 (85)	43.5	37.6	30.6	23.5	18.8	18.8	18.8	25.9	65.9	43.5	20.0	17.6
40 대 (35)	51.4	34.3	20.0	22.9	22.9	14.3	20.0	31.4	65.7	57.1	40.0	11.4
50대 이상 (15)	20.0	26.7	20.0	40.0	6.7	6.7	20.0	33.3	40.0	40.0	6.7	6.7
□ 성 별												
남 자 (132)	41.7	35.6	33.3	30.3	22.7	24.2	26.5	32.6	60.6	49.2	25.0	17.4
여 자 (76)	35.5	30.3	22.4	23.7	19.7	21.1	19.7	17.1	48.7	36.8	23.7	9.2
□ 창작기간												
5년 이하 (59)	30.5	30.5	30.5	30.5	28.8	32.2	33.9	20.3	52.5	39.0	28.8	10.2
5년 이상 (56)	51.8	37.5	28.6	14.3	16.1	25.0	19.6	21.4	51.8	55.4	21.4	14.3
10년 이상 (60)	43.3	36.7	35.0	30.0	26.7	20.0	18.3	33.3	63.3	41.7	26.7	20.0
20년 이상 (32)	31.3	28.1	18.8	37.5	9.4	9.4	21.9	37.5	53.1	43.8	18.8	9.4

문 24) 청소년보호법 8조 2항에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당해
 대체물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
 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2차 검열기관으로
 기능할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례수	P24	
	① 예	② 아니오
	%	%
■ 전 체 (229)	77.7	22.3
□ 장 르 별		
출판예슬 (55)	78.2	21.8
시각예슬 (54)	87.0	13.0
영상예슬 (29)	89.7	10.3
공연예슬 (89)	68.5	31.5
□ 연 령 별		
20 대 (81)	79.0	21.0
30 대 (91)	73.6	26.4
40 대 (43)	83.7	16.3
50대 이상 (13)	76.9	23.1
□ 성 별		
남 자 (144)	81.3	18.8
여 자 (83)	71.1	28.9
□ 창 작 기 간		
5년 이 하 (68)	76.5	23.5
5년 이 상 (60)	76.7	23.3
10년 이 상 (64)	82.8	17.2
20년 이 상 (34)	73.5	26.5

문 25) 귀하께서는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보호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③+④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
■ 전체	(243)	30.9	57.2	88.1	11.9	11.5	.4
□ 장르 별							
출판 예술 (58)		37.9	50.0	87.9	12.1	12.1	.0
시각 예술 (57)		21.1	61.4	82.5	17.5	17.5	.0
영상 예술 (30)		73.3	23.3	96.7	3.3	3.3	.0
공연 예술 (96)		17.7	70.8	88.5	11.5	10.4	1.0
□ 연령 별							
20대 (86)		30.2	55.8	86.0	14.0	14.0	.0
30대 (94)		35.1	55.3	90.4	9.6	8.5	1.1
40대 (47)		29.8	63.8	93.6	6.4	6.4	.0
50대 이상 (15)		6.7	60.0	66.7	33.3	33.3	.0
□ 성 별							
남자 (154)		33.1	54.5	87.7	12.3	11.7	.6
여자 (87)		26.4	62.1	88.5	11.5	11.5	.0
□ 창작 기간							
5년 이하 (70)		34.3	60.0	94.3	5.7	5.7	.0
5년 이상 (65)		32.3	52.3	84.6	15.4	13.8	1.5
10년 이상 (68)		23.5	67.6	91.2	8.8	8.8	.0
20년 이상 (37)		32.4	43.2	75.7	24.3	24.3	.0

문 26) 귀하께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어떻게 유지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P26			
		①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	② 심의기준 등 일부를 수정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③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④ 법의 명칭이 청소년과 무관한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야 한다
		%	%	%	%
■ 전체	(237)	19.8	65.8	.4	13.9
□ 장르 별					
출판 예술 (54)		20.4	61.1	.0	18.5
시각 예술 (58)		13.8	67.2	1.7	17.2
영상 예술 (29)		58.6	34.5	.0	6.9
공연 예술 (94)		10.6	77.7	.0	11.7
□ 연령 별					
20대 (83)		15.7	68.7	.0	15.7
30대 (91)		27.5	58.2	1.1	13.2
40대 (46)		15.2	73.9	.0	10.9
50대 이상 (16)		6.3	75.0	.0	18.8
□ 성 별					
남자 (150)		21.3	62.7	.7	15.3
여자 (85)		16.5	71.8	.0	11.8
□ 창작 기간					
5년 이하 (69)		20.3	63.8	.0	15.9
5년 이상 (63)		28.6	57.1	1.6	12.7
10년 이상 (65)		15.4	73.8	.0	10.8
20년 이상 (37)		10.8	73.0	.0	16.2

▣ 영화진흥법(영상예술에 속한 창작자만)

문 27) 현재 계류되어 있는 영화진흥법은 등급분류를 완전등급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화내용이 타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경우 등급분류를 아니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어 사실상 등급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등급분류보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P27		
		②현행등급 보류제도는 필요하나보 류기준등에 있어보완은 필요하다	③어떠한등 급보류도허 용되지않는 완전등급제 로전환되어 야 한다	④기타
		%	%	%
■ 전 체	(28)	3.6	85.7	10.7
□ 연 령 별				
20 대	(14)	.0	78.6	21.4
30 대	(10)	10.0	90.0	.0
40 대	(4)	.0	100.0	.0
□ 성 별				
남 자	(22)	4.5	90.9	4.5
여 자	(6)	.0	66.7	33.3
□ 창 작 기 간				
5 년 이 하	(15)	.0	86.7	13.3
5 년 이 상	(7)	14.3	85.7	.0
10년 이 상	(4)	.0	75.0	25.0
20년 이 상	(2)	.0	100.0	.0

문28) 다음은 영화진흥법 21조에서 밝히고 있는 등급보류 기준입니다. 이 중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조항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분석 - 3개 선택]

	사례수	①헌법의민 주적기본질 서에위배되 거나국가의 권위를손상 할 우려가 있을 때	②폭력음란 등의과도한 묘사로미풍 양속을해치 거나사회질 서를문란하 게 할 우려 가 있을때	③국제적외 교관계민족 의문화적주 체성등을훼손하여국의 을 해할 우 려가 있을 때	④기타
		%	%	%	%
■ 전 체	(25)	68.0	76.0	64.0	8.0
□ 연 령 별					
20 대	(11)	54.5	81.8	54.5	9.1
30 대	(10)	90.0	70.0	70.0	10.0
40 대	(4)	50.0	75.0	75.0	.0
□ 성 별					
남 자	(21)	71.4	81.0	66.7	4.8
여 자	(4)	50.0	50.0	50.0	25.0
□ 창 작 기 간					
5 년 이 하	(13)	61.5	76.9	61.5	15.4
5 년 이 상	(7)	85.7	71.4	57.1	.0
10년 이 상	(3)	33.3	66.7	66.7	.0
20년 이 상	(2)	100.0	100.0	100.0	.0

문 29) 완전등급제가 시행되어 제한상영권이 도입되더라도 제한상영가 등급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그 분류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P29			
		①하드코어 포르노그래 피이상	②소프트코 어포르노그 래피이상	③포르노그 래피가아니 라도성적수 치심이나폭 력성을자극 하는 작품	④기타
		%	%	%	%
■ 전 체	(23)	60.9	13.0	17.4	8.7
□ 연 령 별					
20 대	(12)	58.3	.0	25.0	16.7
30 대	(7)	71.4	14.3	14.3	.0
40 대	(4)	50.0	50.0	.0	.0
□ 성 별 자					
남 자	(19)	63.2	15.8	15.8	5.3
여 자	(4)	50.0	.0	25.0	25.0
□ 참 작 기 간					
5 년 이 하	(12)	66.7	.0	25.0	8.3
5 년 이 상	(6)	66.7	16.7	16.7	.0
10년 이 상	(3)	33.3	33.3	.0	33.3
20년 이 상	(2)	50.0	50.0	.0	.0

문 30) 제한상영가 등급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 성적 표현뿐만 아니라 폭력적 표현에 대한 기준도 등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P30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
■ 전 체	(22)	68.2	31.8
□ 연 령 별			
20 대	(13)	61.5	38.5
30 대	(5)	60.0	40.0
40 대	(4)	100.0	.0
□ 성 별 자			
남 자	(17)	64.7	35.3
여 자	(5)	80.0	20.0
□ 참 작 기 간			
5 년 이 하	(11)	63.6	36.4
5 년 이 상	(5)	60.0	40.0
10년 이 상	(4)	75.0	25.0
20년 이 상	(2)	100.0	.0

문 31) 완전등급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상도 제고되어야
 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P31	
		②현행위상이 적절하지 만등급위원회 회의전문성 을보완할수 있도록위원 선정기준을 보완해야한 다	③미국의영 화분류및등 급협회처럼 완전민간자 율기구로개 편해야 한 다
		%	%
■ 전 체	(22)	18.2	81.8
□ 연 령 별			
20 대	(12)	33.3	66.7
30 대	(6)	.0	100.0
40 대	(4)	.0	100.0
□ 성 별 자			
남 자	(17)	5.9	94.1
여 자	(5)	60.0	40.0
□ 창 작 기 간			
5 년 이 하	(12)	25.0	75.0
5 년 이 상	(5)	.0	100.0
10년 이 상	(3)	33.3	66.7
20년 이 상	(2)	.0	100.0

■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문 32) 음반, 비디오, 게임물 그리고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의 심의시 음란성 등의
 이유로 음비게법 18조에 의해 등급분류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 보류의
 관정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P32	
		① 예	② 아니오
		%	%
■ 전 체	(83)	90.4	9.6
□ 장 르 별			
영 상 예 술	(25)	96.0	4.0
공 연 예 술	(58)	87.9	12.1
□ 연 령 별			
20 대	(38)	86.8	13.2
30 대	(36)	94.4	5.6
40 대	(7)	100.0	.0
50대 이상	(2)	50.0	50.0
□ 성 별 자			
남 자	(54)	92.6	7.4
여 자	(29)	86.2	13.8
□ 창 작 기 간			
5 년 이 하	(31)	90.3	9.7
5 년 이 상	(21)	95.2	4.8
10년 이 상	(21)	90.5	9.5
20년 이 상	(9)	77.8	22.2

문33) 음악관련 시민단체는 음비개법 18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완전등급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사례수	P33	
		① 예	② 아니오
		%	%
■ 전체	(81)	91.4	8.6
□ 장르별			
영상 예술	(24)	100.0	.0
공연 예술	(57)	87.7	12.3
□ 연령별			
20대	(38)	89.5	10.5
30대	(34)	97.1	2.9
40대	(7)	85.7	14.3
50대 이상	(2)	50.0	50.0
□ 성별			
남자	(53)	94.3	5.7
여자	(28)	85.7	14.3
□ 창작기간			
5년 이하	(30)	86.7	13.3
5년 이상	(20)	100.0	.0
10년 이상	(21)	90.5	9.5
20년 이상	(9)	88.9	11.1

문 34)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위법 시행령 32조에 따르면 게임제공업 또는 문화콘텐츠설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설립시 음란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P34	
		① 수요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② 청소년보호를 위해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의 설치는 정당하다
		%	%
■ 전체	(77)	74.0	26.0
□ 장르별			
영상 예술	(24)	87.5	12.5
공연 예술	(53)	67.9	32.1
□ 연령별			
20대	(35)	80.0	20.0
30대	(33)	75.8	24.2
40대	(7)	57.1	42.9
50대 이상	(2)	.0	100.0
□ 성별			
남자	(52)	76.9	23.1
여자	(25)	68.0	32.0
□ 창작기간			
5년 이하	(29)	86.2	13.8
5년 이상	(18)	77.8	22.2
10년 이상	(20)	65.0	35.0
20년 이상	(9)	44.4	55.6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문 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23조 2항은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해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P35			
		① 국가의 검열행위이다	② 검열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③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더라도 청소년보호를 위한 해필요하다	④ 아무문제도 없는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	%	%	%
■ 전체	(208)	48.6	37.0	13.0	1.4
□ 장르별					
출판 예술	(48)	41.7	47.9	8.3	2.1
시각 예술	(50)	38.0	48.0	12.0	2.0
영상 예술	(27)	77.8	18.5	3.7	.0
공연 예술	(81)	48.1	30.9	19.8	1.2
□ 연령별					
20대	(72)	50.0	34.7	13.9	1.4
30대	(77)	59.7	27.3	11.7	1.3
40대	(41)	39.0	48.8	12.2	.0
50대 이상	(17)	11.8	64.7	17.6	5.9
□ 성별					
남자	(134)	50.7	32.1	14.9	2.2
여자	(73)	43.8	46.6	9.6	.0
□ 창작기간					
5년 이하	(57)	57.9	29.8	12.3	.0
5년 이상	(53)	50.9	35.8	11.3	1.9
10년 이상	(57)	54.4	35.1	10.5	.0
20년 이상	(38)	21.1	55.3	18.4	5.3

문 36) 당신이 만약 자신의 나체사진을 예술적 동기에 의해 홈페이지에 올리게 된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2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에 근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시겠습니까?

	사례수	P36	
		① 예	② 아니오
		%	%
■ 전체	(207)	24.2	75.8
□ 장르별			
출판 예술	(47)	29.8	70.2
시각 예술	(50)	16.0	84.0
영상 예술	(26)	7.7	92.3
공연 예술	(82)	31.7	68.3
□ 연령별			
20대	(71)	25.4	74.6
30대	(80)	17.5	82.5
40대	(40)	22.5	77.5
50대 이상	(15)	60.0	40.0
□ 성별			
남자	(133)	27.8	72.2
여자	(73)	17.8	82.2
□ 창작기간			
5년 이하	(56)	23.2	76.8
5년 이상	(55)	20.0	80.0
10년 이상	(57)	24.6	75.4
20년 이상	(36)	33.3	66.7

문 37)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례수	P37				
		①청소년유 해매체물이 아니다	②국가가검 열하거나규 제할수없으 며표현의자 유가보장되 어야 한다	③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의자의적인 기준을신뢰 할수없다	④해야한다 고생각하지 만잘모르거 나 귀찮다	⑤기타
		%	%	%	%	%
■ 전 체	(143)	32.2	46.9	18.9	.7	1.4
□ 장 르 별						
출판 예술	(30)	40.0	50.0	10.0	.0	.0
시각 예술	(38)	34.2	31.6	34.2	.0	.0
영상 예술	(20)	25.0	65.0	10.0	.0	.0
공연 예술	(53)	28.3	50.9	15.1	1.9	3.8
□ 연 령 별						
20 대	(47)	38.3	48.9	8.5	2.1	2.1
30 대	(61)	24.6	52.5	21.3	.0	1.6
40 대	(28)	35.7	32.1	32.1	.0	.0
50대 이상	(6)	33.3	50.0	16.7	.0	.0
□ 성 별						
남 자	(88)	29.5	52.3	17.0	.0	1.1
여 자	(54)	35.2	38.9	22.2	1.9	1.9
□ 창 작 기 간						
5 년 이 하	(38)	36.8	47.4	13.2	.0	2.6
5 년 이 상	(39)	30.8	48.7	15.4	2.6	2.6
10년 이 상	(42)	28.6	50.0	21.4	.0	.0
20년 이 상	(21)	33.3	38.1	28.6	.0	.0

■ 전기 통신 사업법

문 38)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서 <불온>통신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례수	P38	
		① 예	② 아니오
		%	%
■ 전 체	(213)	46.0	54.0
□ 장 르 별			
출판 예술	(49)	59.2	40.8
시각 예술	(51)	45.1	54.9
영상 예술	(27)	51.9	48.1
공연 예술	(84)	36.9	63.1
□ 연 령 별			
20 대	(73)	41.1	58.9
30 대	(82)	43.9	56.1
40 대	(43)	53.5	46.5
50대 이상	(14)	64.3	35.7
□ 성 별			
남 자	(138)	52.2	47.8
여 자	(74)	35.1	64.9
□ 창 작 기 간			
5 년 이 하	(57)	38.6	61.4
5 년 이 상	(57)	47.4	52.6
10년 이 상	(59)	44.1	55.9
20년 이 상	(37)	56.8	43.2

문 39)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이라는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P39			
		①사회질서 를유지하기 위한적절한 개념이다	②사회질서 를유지하려 는노력은필 요하지만부 적절한개념 이다	③국가권력 이인터넷표 현의자유를 감시하고통 제하기위한 잘못된개념 이다	④기타
		%	%	%	%
■ 전 체	(212)	2.8	34.9	59.4	2.8
□ 장 르 별					
출판 예술	(51)	3.9	39.2	56.9	.0
시각 예술	(51)	2.0	35.3	54.9	7.8
영상 예술	(27)	.0	14.8	85.2	.0
공연 예술	(81)	3.7	38.3	55.6	2.5
□ 연 령 별					
20 대	(73)	.0	38.4	58.9	2.7
30 대	(80)	5.0	22.5	68.8	3.8
40 대	(41)	.0	43.9	53.7	2.4
50대 이상	(17)	11.8	52.9	35.3	.0
□ 성 남 자	(138)	3.6	32.6	61.6	2.2
여 자	(73)	1.4	38.4	56.2	4.1
□ 참 작 기 간					
5년 이하	(57)	.0	33.3	66.7	.0
5년 이상	(57)	1.8	21.1	70.2	7.0
10년 이상	(57)	5.3	38.6	54.4	1.8
20년 이상	(38)	5.3	50.0	42.1	2.6

문 40) 정보통신부 산하 단체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위 법 53조에 의해 인터넷에서의 불온정보 단속,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인터넷내용등급제, 음란물차단 소프트웨어 제작 및 배포 등의 기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P40			
		①청소년 보호등사회 질서를유지 하기위한바 람직한제도 이다	②사회질서 를유지하려 는노력은필 요하지만다 른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③헌법이보 장하고있는 표현의자유 를침해하는 명확한불법 행위임으로 즉각폐지되 어야한다	④기타
		%	%	%	%
■ 전 체	(211)	4.3	52.1	41.7	1.9
□ 장 르 별					
출판 예술	(49)	6.1	59.2	32.7	2.0
시각 예술	(50)	2.0	60.0	34.0	4.0
영상 예술	(27)	.0	25.9	74.1	.0
공연 예술	(83)	6.0	51.8	41.0	1.2
□ 연 령 별					
20 대	(73)	4.1	56.2	39.7	.0
30 대	(82)	2.4	45.1	48.8	3.7
40 대	(41)	7.3	53.7	36.6	2.4
50대 이상	(14)	7.1	64.3	28.6	.0
□ 성 남 자	(136)	5.1	47.1	44.9	2.9
여 자	(74)	2.7	60.8	36.5	.0
□ 참 작 기 간					
5년 이하	(57)	3.5	52.6	43.9	.0
5년 이상	(57)	1.8	52.6	43.9	1.8
10년 이상	(60)	5.0	55.0	36.7	3.3
20년 이상	(34)	8.8	44.1	44.1	2.9

5 부

침해 사례 조사

1. 침해 사례 결과분석
2. 침해사례 - 표형
3. 침해사례 - 서술형

1. 침해 사례 결과분석

이번 자료조사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종 법령으로 인하여 창작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아온 사례를 찾고 그 유형을 살펴 창작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형태로 침해되어 왔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주요내용은 음악, 영화, 미술, 문학, 연극, 만화 등 모두 6개 분야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대표적인 탄압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음악 분야 중 최초의 침해 사례는 1962년 작사가 조명암의 〈가로의 황혼〉으로 시작해 최근 연예인 하리수 씨의 〈템프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19로 구성되어 있다. 검열의 주체는 조선총독부로 시작해 방송윤리위원회, 박정희 유신 시대 '대중가요 재심 원칙과 방향', 공연윤리위원회, 방송사 가요심의위원회 및 공연예술진흥협회의,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변화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음악 장르의 특성상 저속된 음반은 발매금지와 가사개작요구 그리고 방송금지 판정을 주되게 받았다는 것이고, 정태춘 씨 《92년, 종로 장마》의 공윤 심의 거부로 인해 1993년 사전심의제가 폐지된 것이 기록적인 성과로 돋보인다.

영화 분야는 주로 1996년 사전심의가 위헌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영화법에 의한 사전심의'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왔다. 1996년 영화인들의 노력으로 사전심의가 삭제되고 영화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등급분류보류라는 장치에 의해 표현의 자유는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등급분류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만화 분야는 그림 장면 및 대사가 집중적으로 탄압의 빌미가 되었다. 특히 만화 분야의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의 단속이 집중적이며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중 1997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발효이후 정부의 청소년보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스포츠만화, 단행본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눈에 띄는 지점이다.

문학에 대해서는 90년대 이후의 사례 위주로 조사되었다. 1990년대에 진행된 문학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음란물' 논쟁의 마광수 씨의 『즐거운 사라』와 장정일 씨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이며 이 두 작품의 경우 모두 형법상 음란물 제작 및 유통,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 작가의 인신 구속이라는 피해를 남기도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또한 문학의 경우 대북 정책에 따른 작가 제재 및 출판 제재 조처들이 이뤄지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술분야는 80년대 시대흐름을 반영한 작품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대

한 규정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아 왔는데 90년대 이후에는 청소년보호법 등 다양한 법령에 의해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김인규 씨의 경우는 인터넷상 웹아트에 가해진 표현의 자유 침해 1호라 볼 수 있다.

연극분야는 대부분 '음란물'에 대한 규제에서 시작된다. 이는 90년대 이후 연극계에 일기 시작한 성에 대한 표현의 증가에 따른 제재조치로 일컬어지며, <미란다>, <로리타>의 경우 모두가 공연 조기종료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들 사례의 특징은 우리 나라 정치현실과 탄압의 이유가 긴밀하게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편, 정치적으로 반일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왜색'이,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반일'이 문제가 되었다. 또, 90년대를 기준으로 90년대 이전에는 주로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90년대 이후에는 '불온', '음란'을 이유로 작품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왔다. 이는 국가보안법과 영화법(현 영화진흥법)이 지속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가운데, 90년대 이후에 청소년보호법,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이 표현의 자유 침해의 한 도구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자료조사는 이제까지 예술 창작에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특징적인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각종 법령과 제도가 억압했던 무수한 사례를 모두 싣고 있지 못하다. 그 '무수한' 사례는 비슷한 유형으로 인해 조사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된 것도 있으나 상당 부분의 사례가 발굴되지 않았기도 하다. 그래서 이들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이후 과제로 남는다.

2. 침해 사례 조사표

(1) 영화

년도	침해사건명	침해 작가	저촉된 법령	사건경위 및 사유	예술창작물에 대한 조치
1961	오발탄	유현무	5·16 쿠데타 이후 심의강화로 인한 사전심의	노파의 '가자 가자'의 대사가 월북을 암시한다고 해석되어 상영정지 당함	상영정지
1965	7인의여포로	이만희	반공법 4조 1항	북한군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돌아온여군>으로 교체상영
1965	춘몽	유현목	음화제조죄	반라 상태로 달려가는 여주인공의 뒷모습이 6초 정도 드러났다는 것이 저촉	
1986	파랑새	홍기선 이효인	영화법 12조 1항 (사전심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하다가 죄목을 찾지못해 영화법 적용, 징역 6개월 선고유예	
1988	오!꿈의나라	장 산 꽃 매	영화법 12조 1항 (사전심의) 영화법 4조 1항 (등록미필)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장산꽃매 대표 홍기선과 유인택 대표를 고발, 30만원의 벌금형	
1989	구로아리랑	박종원	사전심의	상영하루전날 재심의라는 명목으로 20여 곳 삭제 당함	20여 곳 삭제
1990	그들도 우리처럼	박광수	사전심의	광주관련 다큐멘터리 부분 삭제	문제 부분 삭제
1990	부활의노래	이정국	영화법	공론은 심의조정 시한을 훨씬넘긴후 25분을 삭제, 영화사는 최종심의를 받기전 영화상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만원선고	
1990	파업전야	장동홍 장 산 꽃 매	영화법4조(등록미필), 12조1항(사전심의)	공론 심의없이 상영	
1991	어머니, 당신의 아들	영 화 제 작소 청 년	영화법 12조1항	사전심의없이 대학가에서 상영하였다는 혐의로 제작자 이상인씨는 징역 10월 징유 2년을 받았다	

년도	침해사건명	침해 작가	지촉된 법령	사건경위 및 사유	예술창작물에 대한 조치
1992	단편 교문을 열며	장산꽃매	영화법 12조1항	사전심의없이 상영하였다는 혐의로 장산꽃매대표 강현씨 불구속기소	
1995	해적	박성배	사전심의	공륜심의에 의한 57컷 삭제외에 공륜 영사기사에 의해 93컷이 잘려나가 내용전달이 어려워짐. 영화사에서 임의대로 편집하여 영화상영하여 행정처분 받음	93컷 삭 제
1996	유리	양윤호	사전심의	수도승의 강간장면과 폭력장면 등 2곳 삭제	문제부분 삭제
1997	나쁜영화	장선우	사전심의	윤간, 오럴섹스 장면 때문에 등급보류하려 하자 감독과 제작자가 재심의 요청, 6분 가량 삭제후 공륜통과	6분 가량 삭제
1997	레드헌트	조성봉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에 의한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감독과 이를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서준식씨를 구속	
1999	노랑머리	김유민	영화진흥법 21조4항(등급보류)	성보사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등급보류받음. 제작사측의 삭제 이후 연소자관람불가 등급으로 상영	등급보류
1999	거짓말	장선우	영화진흥법 21조4항(등급보류) 음란물제작 및 배포	2번의 등급보류 후 개봉한 영화에 대해 음대협이 감독과 제작자를 고발	등급보류
1999	둘하나섹스	이지상	영화진흥법 21조4항(등급보류)	공륜의 등급보류 결정에 반발하여 제작자 조영각씨는 영화진흥법 21조4항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였으며, 2001년 9월 위헌 결정 내려짐	등급보류
2000	춘향전	임권택	청소년보호법 26조 2항	미성년자에게 가슴이 드러나는 노출장면을 연기하게 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감독 및 제작자를 고발하겠다고 함	

(2)만화

년도	침해사건명	침해 작가	지촉된 법령	사건경위 및 사유	예술창작물에 대한 조치
1958	고바우영감	김성환		자유당말기에 경무대의 위세를 풍자한 시사만화를 그려 제재를 당함.	과태료 450환
1961	고바우영감	김성환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면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을 비꼬아 '옛장수 마음'으로 표현, 쿠데타당국에 제지 당함.	1주일발표정지
1969	요괴인간			1968년 한국아동만화 윤리강령이 발표되면서 만화에 대한 심의가 강화됨. <소년중앙>이 부록으로 발간하던 만화 <요괴인간>에 대해 윤리위의 경고가 거듭됨.	
1986	강순이	이은홍	국가보안법	1986년 <노동자신문>에 국방위 회식 사건을 다룬 만화 <강순이>가 '군대를 건드렸다'는 죄를 뒤집어씀	
1986	두꺼비	안의섭		전두환을 비꼬는 시사만화를 그려 경계	1년7개월정지
1987	만화정신	손기환	국가보안법	<만화정신>2집출간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협의를 받음. 이후 무혐의 판결.	
1997		허영만,이희재,이두호,이현세 등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의 발효와 함께 국내의 만화 1천7백여종, 5백10만권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됨	
1997	스포츠지연 재만화 탄압	이 두 호 등 13인		1997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발효와 일진회 사건 등으로 인해 스포츠신문재만화에 대한 검찰의 탄압 거세짐. 검찰은 스포츠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작가들을 대거 소환, 불구속 기소	만화가들 한 달간 정지
1997	진짜 사나이	박산하		1997년 7월, 서울문화사에서 펴내는 정기간행물에 <진짜 사나이>를 그린 작가 박산하씨가 폭력성의 혐의로 검찰의 소환	
1997	천국의 신화	이현세	형법(음란문서 제조혐의)	수간, 집단강간 등 지나치게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묘사로 청소년들에게 음란성과 잔인성을 조장한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998년 6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 이후 2001년 6월 서울지법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음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년도	침해사건 명	침해 작가	지속된 법령	사건 경위 및 사유	예술 장작물에 대한 조치
1962	<가로의 황혼> 방송 금지곡	작사가 조명암	방송윤리위원회 심의	월북작가의 작사곡 건국 후 최초의 금지곡	방송 금지
1965	<동백아가씨>	이미자	방송윤리위원회 심의	표절, 가사 저속, 왜색	방송 금지곡
1975	한대수 2집< 고무신> 판금	한대수	방송윤리위원회 심의	체제 전복적인 노래를 수록했다 하여 판금 조치를 당함. 75년 당시 앨범의 마스터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소각됨. 1989년 7월 1 일 재발매(서울음반)	음반 판매 금 지
1975	아침이슬 외 국내 가요 재 심	김민기 외	박정희 유신 시 대 "대중가요 재심 원칙과 방향"	방송 부적합. 시의에 맞지 않은. 창법 저속, 가사내용 불신감 조장 등의 이유. 국내 가 요 225곡 금지곡 처분/ 1987년 공연금지 해제조치 예의한 일부 금지곡 해금	발매 금지 및 수거
1978	<시인의 마을> 개작 심의	정태춘	공연윤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중가요 가사로는 방향, 불건전 요소가 짙 어 부적절하다는 판정. 개작 후 심의 통과 이후 84년 본 가사로 그대로 통과	심의 결정-가 사 개작
1978	<사랑하고 싶 소>가사 개작	정태춘	공연윤리위원회 사전심의제	"내용이 너무 직설적, 통속적. 지나치게 방 황을 강조" 이유로 개작 요청. 개작 없이 재심의 통과	심의 결정-사 개작
1983	<독도는 우리 땅>방송 금지	정광태		반일감정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방송금지	방송금지
1987	<인사동> 외 6개 노래 개 작 심의	정태춘	공연윤리위원회 사전 심의제	특정지역 왜곡, 비하시킬 수 있는 내용 우 려, '문둥이'라는 표현 등의 이유로 개작 요 구. 가수 정태춘 씨 세 차례의 재심 요청	결국 개작 2편, 통과 1편 반려 1편의 결과를 받음.
1993	<92년. 종로 장마>공윤심 의 거부	정태춘	공연윤리심의 위 원회 사전심의제	공윤 심의 거부-위법 음반으로 검찰 기소 가수 정태춘 씨 공윤 사전 심의 위헌 제소 신청 후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의제 위헌 판결(1996)	사전심의제 위 헌 판결 음반사전제 폐 지
1995	서태지와 아 이들의 <시 대유감>가사 수정 심의	서태지와 아이들	공연윤리위원회 사전심의제	가사 문제-수정 지시 내림. 가사 없이 연 주곡으로 발매됨	방송금지
1996	패닉 <벌레>, <마 마>방송 불가 판정	패닉	방송사 가요심의 위원회	가사 문제-교사 비방. 직설적이고 거친 표 현에 대한 각 방송사 가요심의위원회에서 방송 불가 판정.	방송 불가 판 정

1997	윤도현 <이땅에 살기 위하 여>	윤도현	방송사 가요심의위 원회	문화방송에서는 "보수층을 자극할 우려" 때문 에,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선동적"이라는 이유	방송 불가 판 정
1997	유승준 <웨스트 사 이드 스토리><인 트로> 가요부적합 판정	유승준	공연예술진흥협회의 사후 심의	피, 머더피커 등의 영어 비속어 음반 제작사 서울음반측이 음반을 전량 회수해 클린버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요부적합 판정
1998	양현석<무시>,<악 마의 연기> 등 4 곡 방송 부적격판 정	양현석	KBS 가요심의 위 원회	가사가 과격하다는 이유 가요심의 위원회의 심의에서 재심의까지 거쳤 으나 역시 방송금지 판정	방송 부적격 판정
1998	<조피디 인 스타덤 > 연소자 판매 금지 판정	조PD	공연예술진흥협회의	남성성기를 상징하는 비속어가 들어 있고 청소년 선도외지를 부정적으로 폄하했다는 이유 '청소년 유해' 판정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음 반
2000	DJ DOC 5집 (더 라이프 디오시 블 루스) 연소자 판매 금지, 방송 부적격	D J DOC	한국영상물등급위 원회	5집에 들어 있는 <Lie>와 <포들이>의 가사가 문제가 되어 발단 5집 앨범 'The Life..Doc Blues 5%'가 '연 소자 이용불가 음반' 판정 앨범의 모든 노래가 방송 금지 처분	청소년 판매 금지 결정 방송 부적격 판정
2001	지누션 3집 방송 불가	지누션	KBS 가요심의 위 원회	"대부분의 노래가 인종차별적인 용어를 쓰는 등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 <빙빙빙>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곡 모두 방송 금지 처분	KBS 방송 금지처분
2001	씨이 씨이 프롬 더 씨이코 월드' 18세 이용 불가 판정	씨이 씨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선정적인 앨범 채킷과 음란한 가사가 청소년용 으로 부적절 판정 제작사인 예당엔터테인먼트에 성인용으로 채포 장해 판매하도록 처분	연소자 이용 불가
2001	하리수 데뷔곡 < 템프레이션> 방송 불가 판정	하리수	MBC 가요 심의위 원회	'노래가사가 성적인 유희가 강하다'는 이유 MBC 방송 불가 판정	방송불가 판 정

년도	침해사건명	침해 작가	저촉된 법령	사건 경위 및 사유	예술창작물에 대한 조치
1965	분지	남정현	반공법 4조	본인도 모르게 북한의 잡지에 게재	1987년까지 금서 조치
1974	오적	김지하	국가보안법	1964년 대일 굴욕 외교 반대투쟁에 가담. 이후 1974년 그의 시집 <오적>이 이적표현물이라는 논란시작	작가 인신 구속
1970	반로	염재만	형법	김찰은 소설 반로가 변태적인 남녀가 동거하면서 노골적이고도 구체적인 성교장면 등을 묘사해 성욕을 자극시키는 등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작가 염재만(廉在萬)씨를 기소	작품 제재조치
1985	붉은산검은피	오봉옥	국가보안법	오봉옥의 시집 '붉은산 검은피'가 북한 한 문예지에 실리면서 이적표현물 논란	출판금지
1992	즐거운 사라	마광수	형법, 미성년자보호법	1991년 '즐거운사라' 출간 후 간행물윤리위원회 제재로 출판사 자진 수거 및 절판	작가 인신구속 및 연세대 직위 해제, 수거 및 절판
1994	한국 사회의 이해	장상환, 정진상 교수	국가보안법	김찰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동조 및 이적표현물의 제작 소지 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인신구속
1994 1999	태백산맥	조정래	국가보안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	1994년 이승만 전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 씨와 대한파월유공진우회 등 8개 단체가 국가보안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작가를 고발	작가 검찰 기소
1997	나는 야, 통일 1세대	이장희	국가보안법	책에 대해 일부 언론이 책에 대한 이적성 문제를 제기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1997	내게 거짓 말을 해봐	장정일	형법	1997년 5월 네 번째 장편소설 「내게 거짓 말을 해봐」의 외설 문제부각	자진 수거 및 인신구속

년도	침해사건명	침해 작가	저촉된 법령	사건 경위 및 사유	예술창작물에 대한 조치
1989	민족해방운동사결개그림	홍성담	국가보안법, 형법	1989년 6월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제에 '민족해방운동사'라는 대형 걸개 그림 보낸 것	작가의 인신 구속
1989	모내기 이적표현물 논란	신학철	국가보안법	'모내기'를 그림전에 출품하고 달력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	작품 회수
2001	아 한반도	안성금	국가보안법	2000년 갤러리 사비나의 '노컷전'을 두고 해당경찰청인 종로경찰서 담당공무원이 작가 및 화랑에 전시 취소 및 작품수정 권고	작품 전시장소불허
2001	갤러리 사비나 노컷전	박불뚱	형법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작품화한 것이 명예훼손죄 및 초상권 침해라며 경고조치	작품수정
2001	여고생	최경태	청소년보호법	교복을 입은 여자의 성기노출로 인해 작품에 청소년을 등장시켰다는 이유로 수정 조치	작품명 변경
2001	인터넷상 웹아트	김인규	망법	자신의 홈페이지에 부인과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작가의 홈페이지를 정부의 조치로 자동 폐쇄됨	작품 삭제

(연극)

년도	침해 사건명	침해 작가	지속된 법령	사건 경위 및 사유	예술창작물에 대한 조치
1999	로리타	연출자 및 연극관계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위가 극 안에서 여고생인 임모양이 알몸으로 2분간 성행위를 연기한 장면을 두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방침	조기종료
1995	미란다	연출자겸 극단 대표 최명효	공연법	알몸공연으로 화제를 낳았던 연극 미란다가 검찰에 의해 외설로 규정돼 재판에 회부	상영종료와 연출자 인신구속
992	북한 공연극 '피바다'	동국대생 노동우	국가보안법	동국대 학생회관에서 북한원전소설 피바다를 각색해 만든 연극에 조연배우로 출연한 혐의로 구속	징역 10월, 자격정지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석방

3. 침해사례 서술형

(1) 영화

1) 오발탄 (1961 / 대한영화제작 / 유현목 감독)

유현목 감독의 영화 <오발탄>은 1959년에서 1960년 13개월에 걸쳐 제작된 작품으로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발발 이후 군사정권에 의해 상영저지 당하였다.

당시의 영화검열은 4·19 혁명 이후 잠깐 동안 '영화윤리전국위원회'라는 민간 자율심의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오발탄>의 제작 및 상영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5·16 군사쿠데타 이후 심의가 강화되었고 1962년 영화법이 제정되면서 철저한 사전심의가 시행되었다.

상영저지의 이유는 영화 <오발탄>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켰고, 노파의 "가자! 가자!"라는 대사가 월북을 암시한다고 해석돼 당시 군사정권으로부터 상영정지를 당했던 것이다.

<오발탄>은 결국 27개월 동안 상영중지 당하였으나, 63년 다시 해금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남가주대 교수이자 영화평론가인 닥터 맥케인이 한국에 와 제 7회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 출품할 작품을 고르다 <오발탄>을 공보부에 추천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해금하였다.

2) 7인의 여포로 (1965/ 합동영화제작 / 이만희 감독)

1965년 4월 <7인의 여포로>를 만든 이만희 감독이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포로가 된 국군 간호장교들이 중공군에게 집탈당할 위기에 처하자 호송하던 북한 인민군이 중공군과 싸워 물리친 다음 귀순한다는 얘기로 당시 6·25 소재영화는 첫째 국군이 절대 이길 것, 둘째 북한의 인민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인물로 나타내야 할 것이 검열지침이었는데 당국은 <7인의 여포로>가 두 번째 조항에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고 이만희 감독을 반공법 4조1항 위반으로 구속한 것이다.

결국 <7인의 여포로>는 이후 제목을 <돌아온 여군>으로 고쳐 상영되었다. '여포로'란 제목은 국군을 주격으로 보지 않고 북한쪽 중심으로 붙여진 것이라는 이유였다.

3) 춘몽 (1965/ 세기사상사 / 유현목 감독)

1965년 유현목 감독은 영화 <춘몽>에서 반라상태 여배우의 뒷모습을 6초 동안 드러냈다는 이유로 '음화제조죄'에 저촉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춘몽>에는 옷이 찢어지면서 반라상태로 달려나가는 여자의 뒷모습이 6초 정도 드러났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유현목 감독이 당시 법정에 서게 된 때에는 그가 이만희 감독의 <7인의 여포로>에 대해 국제세미나의 강연에서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더 큰 이유였다. 그는 그 강연에서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일 수 없고, 다만 자유진영의 전초기지로서의 입지적 조건 때문에 국시로 주장되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 반공법에 걸렸던 것이다.

4) 파랑새 (1986 / 서울영상집단 / 홍기선 감독)

농촌의 피폐한 현실과 농민의 삶을 다룬 8mm 단편영화 <파랑새>의 감독 홍기선과 당시 홍기선이 활동하고 있던 서울영상집단의 사무국장 이효인이 영화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카톨릭 농민회'의 의뢰로 제작되어 카톨릭 농민회의 조직망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동상영되던 이 영화 관계자인 홍기선과 이효인에 대해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마땅한 죄목을 찾지 못하자 영화법 위반 명목으로 구속·기소하였고,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7년 3월 30일 홍기선과 이효인에게 영화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영화법'에 나와있는 공륜에 의한 사전심의는 영화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5) 오! 꿈의 나라 (1988/ 장산꽃매)

대학내 영화씨클과 영화연합모임에 의해 결성된 장산꽃매는 5·18을 소재로 한 83분짜리 16mm 영화 <오! 꿈의 나라>를 1988년 12월에 제작하였고 1989년 1월 14일부터 26일까지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유료상영하였다.

이에 대해 1989년 1월 16일 문화공보부장관은 장산꽃매를 등록하지 않은 채 영화를 제작했다는 혐의(영화법 제4조 1항 위반)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혐의(제12조 제1항 위반) 두가지로 장산꽃매의 대표 홍기선을 고발하였다. 또 서대문구청장은 1월 14일, 당시 <오! 꿈의 나라>가 상영되었던 예술극장 한마당의 대표 유인택 역시 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16mm 영화는 영화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영화를 업으로 제작한 것도 아니며, 공연장 제공자는 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누르고 1989년

10월 각 3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홍기선과 유인택은 영화법 제12조의 사전심의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은 1991년 5월 헌법재판소에 이 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96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

6) 구로아리랑 (1989/ 화천공사/ 박종원 감독)

1989년 6월 <구로아리랑>은 상영시작 하루전날 '재심'이라는 이유로 사전 검열을 받고 20여 군데가 가위질 당한 채 상영되었다. <구로아리랑>이 상영 전날 가위질이 된 이유에 대해 당시 공륜의 영화부장은 "당시 대우조선 노사분규 등 대규모 노사대립이 첨예화돼 있는 사회적 상황"이 큰 이유였다고 한 공청회에서 밝혔다.

7) 그들도 우리처럼 (1990 / 동아수출공사/ 박광수 감독)

쫓기는 운동권 청년의 눈으로 탄광촌의 모습을 그린 박광수 감독의 <그들도 우리처럼>은 주인공이 운동권 활동을 회상하는 장면중에서 광주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부분이 삭제되었다. <그들도 우리처럼>은 이후 프랑스 낭트에서 열린 3대륙 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상과 여자연기상을 받았다.

8) 부활의 노래 (1990 / 세방영화제작소/ 이정국 감독)

1980년 광주를 다룬 영화 <부활의 노래>는 원래 상영시간 116분에서 초반부 16분을 자진삭제한 후 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심의조정 시한인 8월 12일을 훨씬 넘긴 9월 17일, 상영시간의 4분의 1인 25분 13초를 추가로 가위질 당하였다.

1991년 3월, <부활의 노래>는 공륜의 최종심의를 받기 전 미리 상영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영화법 위반죄로 적용되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부활의 노래>는 1993년 공륜의 재심에서 영화전편이 무수정 통과되어 94년 재개봉되기도 하였다.

9) 파업전야 (1990/ 장산꽃매/ 장동홍 감독)

1990년 3월, 공륜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유료상영을 한 <파업전야>는 당시 영화법 제4조, 등록미필 위반 혐의를 받았고, 이로 인해 장산꽃매 대표 이용배와 상영관인 예술극장 한마당의 대표 김명곤은 영화법제12조 제1항(사전심의), 제4조

1항(영화업자의 등록)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영화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공연법 제25조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으나 "영화가 가지는 대중예술성과 표현의 직접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연예활동보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법원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으며, 환송후 서울형사지법은 1994년 7월 13일 대법원의 취지대로 무등록제작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도 합헌판결을 내렸다.

10) 어머니, 당신의 아들 (1991/ 영화제작소 청년)

영화창작생들로 결성된 영화제작소 <청년>에 의해 1991년 3월, 제작된 <어머니, 당신의 아들>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작자는 물론 상영자까지 구속수사되었다.

80년대 운동권학생 아들과 노점상 어머니를 통해 당시 사회상을 얘기하고 있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제작한 영화제작소 <청년>의 대표 이상인씨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제작하여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전국 대학가에서 상영하였다 는 혐의로 1991년 6월 구속되었다. 1991년 9월, 서울형사지법 이진성 판사는 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제작, 상영한 혐의(영화법 위반)로 이상인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하였다.

그외에도 당시 당국은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자주 민주 통일을 표방한 좌경 운동권 주장 등 이적성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상영자를 국가보안법 및 공연법 위반혐의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으며, 대학에 이 영화의 상영지지를 위해 페퍼포그와 물대포를 동원하는 등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기도 하였다.

11) 닫힌 교문을 열며 (1992/ 장산곶매)

1991년 5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고교 교사와 인문고 취업반 학생들이 겪는 교내 민주화운동을 그린 16mm 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는 문화부가 사전 제작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상소와 녹음실 등의 업체 관계자들에게 장산곶매 작품의 제작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제작과정에서부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시 교육부는 이 영화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 고교생들의 관람금지 지시를 내렸고, 당국은 대학가 상영불가방침을 세웠고 1991년 8월, 서울지법은 31일 공률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국 40여개 대학에서 자신이 제작한 영화 『닫

힌 교문을 열며』를 불법 상영한 혐의(영화법 위반)로 <장산곶매> 영화사 대표 강현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강현씨는 "사전심사제를 규정한 영화법 제12조1항은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고 서울형사지법10단독 김건일판사는 "상영전에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영화법 12조1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2항에 위배된다"며 위헌신청한 장산곶매 대표 강현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2) 해적 (1995/ 한국영화기획정보센터 /박성배 감독)

당시 제작기간 1년, 제작비 8억 5천을 들인 영화 <해적>은 94년 지존과 사건 이후 공률의 폭력묘사에 대한 심의가 엄격해지면서 심의 결과 6곳의 화면 단축과 3곳의 대사 삭제 등 모두 9곳 57컷 단축으로 공률 심의가 나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주인공이 상대 폭력배의 손가락을 손도끼로 자르는 장면, 서울역 앞의 집단 난투극, 청부살해된 회사 사장이 목욕탕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 "경찰들이 어깨에 잎사귀를 다는 건 바람에 잘 흔들리라고 다는 거지"와 같은 공률력에 대한 불신을 담은 대사 등이다.

하지만 <해적>은 심의위원회가 지적한 대목 외에도 공률 사무국의 영화부장관 영사기사에 의해 임의대로 35곳 93컷이 잘려나가는 바람에 내용 전달이 어려운 지경까지 되었다. 이후 영화사측은 심의의견서에 준해 자신들이 자진 삭제한 필름을 만들어 극장에 보냈으나 공률에 의해 제지받았고 영화사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영화사는 법원에 공률 사무국의 직권남용과 심의위원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려 했으나 무자비한 삭제에 의한 영화의 개봉 차질과 흥해부진으로 인해 영화사는 부도가 났고, 영화사 법인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해적>은 1996년 영화 사전심의 위헌판결 후 코아아트홀에서 무삭제 오리지널 필름을 복원상영하기도 했다.

13) 유리 (1996/ 하명중영화제작소/양윤호 감독)

33세 수도승의 치열한 수행을 그리고 있는 영화 <유리>는 음양의 조화, 생명의 본질 등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양윤호 감독은 수도승의 섹스와 살인을 집어넣었는데, 이 부분이 불교를 모독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률의 제지를 당하였다.

공률은 특정 종단을 연상시키는 범복을 입거나 강간하는 장면 등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특히, <유리>는 당시 칸느영화제 비평가 주간 및 최우수 신인

감독상 후보에 한국영화로는 처음 초청되어 필름 삭제여부를 놓고 더욱 논란이 되었는데, 공륜은 당시 칸 영화제 초청을 계기로 재론한 끝에 좇붙승이 조계종 법복을 입은채로 강간을 하는 대목 등 2곳을 삭제하고, 주인공 유리가 법복 차림으로 살인을 하는 장면을 단축해야만 심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영화사측에 통보했으나 당시 감독과 제작사측은 "상영을 못하더라도 필름을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펼쳤다. 이로 인해 당시의 문화체육부는 공륜심의를 통과되지 않은 필름에 대해 해외반출 통관추천을 하기 어렵다고 밝힘으로써 <유리>의 칸느상영마저 불투명하게 되자 한국영화감독협회 등은 사전심의 폐지와 완전 등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간담회와 서명운동 등의 캠페인을 벌였다. 이후 공륜은 해외출품에 한해 무삭제 통과를 결정하여 결국 <유리>는 무삭제로 칸느영화제에서 상영되었으나, 국내 상영판은 문제장면을 삭제하여 상영할 수밖에 없었다.

14) 나쁜영화 (1997 / 미라신코리아/ 장선우 감독)

10대 청소년들의 모습을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은 장선우 감독의 <나쁜영화>를 심의한 공륜은 1997년 7월 21일 <나쁜영화>의 윤간이나 오럴 섹스 장면이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일반극장에 상영하기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등급보류 판정을 내리려 하였고, 이에 장선우 감독과 제작사(미라신 코리아)가 공륜을 방문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공륜의 이러한 결정에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중고생들의 포르노 비디오 제작과 청소년보호법의 시행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심의 요청후 제작사측은 문제가 되었던 윤간, 오랄섹스 성기노출, 단란주점에서의 변태적 성행위, 청소년의 지나친 비속어 사용 등 6분 가량의 장면을 부분 삭제한 후 공륜에 재심의를 요청한 후 7월 29일 연소자관람불가의 등급 판정을 받아 8월 2일 전국 극장에 상영하게 되었다.

15. 레드헌트 (1997/ 하늬영상/ 조성봉 감독)

제주 4·3 항쟁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에 대해 검찰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로 1998년 2월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되어 출국하려는 제작자이자 감독 조성봉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어 부산지법 우성만 판사는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레드헌트>가 이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작품으로서 이적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레드헌트>의 인권영화제 상영과 관련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의 서준식대표와 인권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인 김동원 감독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998년 1월 구속기소되었다. 그러나 1999년 9월 서울지법은 <레드헌트>가 사회를 위해할 소지가 없으므로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결정과 함께 서준식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16) 노랑머리(1999/ 픽션뱅크/ 김유민 감독)

1997년 10월 공연예술진흥협의회 출범 이후 1999년 3월 영화 <노랑머리>는 처음으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게 되었다. 여자 2명과 남자 1명이 혼음을 하는 등 섹스묘사가 지나친다는 점 때문에 등급보류판정을 받은 <노랑머리>는 1996년 영화진흥공사의 판권담보 용자 지원작으로 뽑혀 3억원의 국가 지원을 받아 제작된 작품이어서 상영금지 처분이나 다름없는 등급보류 판정에 대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심의위는 회의를 통해 등급 보류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내용을 대폭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3개월 후 재심을 해도 등급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노랑머리>는 영화진흥법이 그해 5월에 다시 개정되면서 공진협이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로 바뀌었고, 1분 30초 가량의 분량을 제작사측의 자체 삭제함에 따라 18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아 상영되었다.

17) 거짓말 (1999/ 신씨네/ 장선우 감독)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영화화한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은 1999년 8월과 11월, 두번의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이후 5개월 동안 영상물등급위와 힘겨운 싸움 끝에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고 2000년 1월 8일 개봉되었다. 그러나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 시민협의회(음대협)이 장선우 감독과 제작사인 신씨네의 신철 대표, 단성사 등 1백여개 개봉관 극장주들을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의해 감독과 제작자가 검찰에 소환되는 등 <거짓말>을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음대협은 <거짓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영화관람 거부운동을 전개하였고, 검찰은 제작자와 감독을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2월 16일 밝혔고, 이후 신철씨와 장선우 감독은 형법상 음화 제작 및 배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음대협은 또 <거짓말>의 비디오 출시와 관련하여 같은 해 3월 '거짓말 비디오 불매 범시민연대'를 구성하여 비디오 배포사인 (주)세한을 음란물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같은해 6월 서울지법은 <거짓말>에 대해 "음란성이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으며, 2001년 4월에는 서울고법에서도 장선우 감독 등을 음화제조 배포 혐

의로 고발한 음대협 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18) 둘 하나 섹스 (1999/ 인디스토리 / 이지상 감독)

16mm 독립영화 <둘 하나 섹스>는 서른 살 남녀와 열아홉 살 남녀를 각각 주인공으로 하여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녀의 일탈적인 사랑과 섹스와 욕망을 그리고 있다.

영상물 등급위는 1999년 9월 이 영화에 대해 <노랑머리>와 <거짓말>에 이어 세 번째 등급보류 결정을 내렸다. 등급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 영화의 제작자인 조영각씨는 "다시 심의를 신청하면서 필름에 손댈 생각이 전혀 없으며 또 등급보류가 결정될 경우 헌법소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당시 밝혔다.

결국 등급보류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루어졌으며, 헌법재판소는 2001년 9월 30일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에 의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상영등급보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영상물등급위의 '등급보류'가 위헌임을 판결하였다. 또 헌법재판소는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실질적인 검열, 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영화 심의제도의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19) 춘향전 (2000/ 태흥영화사/ 임권택 감독)

2000년 2월 1일 청소년보호위원회(당시 위원장 강지원)는 임권택감독의 영화 <춘향전>에 대해 춘향역의 여배우 이효정의 가슴이 드러나는 노출장면이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 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비추었다.

이후 2월 3일 청소년보호위원회측은 다시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문을 내었으나,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영화에 출연할 경우 '청소년의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애매한 문제로 인해 자의적 해석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제기되었다.

이후 춘향역을 맡았던 이효정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10대 청소년 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2) 만화

1) <고바우 영감> (1958. 김성환)

동아일보에 <고바우 영감>이라는 시사만화를 연재하는 김성환 화백은 자유당 말기에 경무대의 위세를 풍자한 '경무대똥통' 사건으로 450환의 과태료를 물었다.

2) <고바우 영감> (1961. 김성환)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면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을 비꼬아 '옛장수 마음'으로 표현하여 쿠데타 당국에 해명서를 제출하고 1주일간 발표 정지를 당하였다.

3) <요괴인간> (1969)

<소년중앙>이 부록으로 발간하던 만화 <요괴인간>에 대해 윤리위의 경고가 이어졌다. 1968년 문화공보부는 원래 있던 한국아동만화 자유회를 해체하고 윤리위원회를 조직하여 만화원고 사전심의를 개시하였고, '한국아동만화 윤리강령' '한국아동만화 실천요강'을 제정하였다.

4) <깡순이> (1986. 이은홍)

작가 이은홍씨는 86년 <노동자신문>에 국방위 회식 사건을 다룬 만화 <깡순이>를 그렸는데, 이 만화가 '군대를 건드렸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국가보안법에 걸리게 되었다.

5) <두꺼비> (1986. 안의섭)

한국일보에 <두꺼비>라는 시사만화를 연재하는 안의섭 화백은 86년 1월 19일 중앙을 앓고 있던 레이건 미 대통령을 빗대 전두환대통령의 생일에 '각하, 만수무강하십시오'라는 내용을 파문을 일으키게 되어 86년 1월 19일부터 87년 6·29 선언이후까지 1년 7개월동안 절필하는 수난을 겪었다.

6) <만화정신> (1987. 손기환)

민족미술협의회 만화분과 위원장 손기환씨는 <만화정신> 2집 출판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이후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7) 청소년보호법 발효와 청소년유해매체 만화목록 (1997)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출범 직후 '청소년유해매체 목록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이 목록표에는 1천7백여종, 5백 10만권에 달하는 국내외 만화가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만화가 이현세, 허영만, 이두호, 이희재 등 국내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들도 함께 포함되었다.

스포츠신문 연재 만화 탄압

8) 스포츠신문 연재 만화 탄압 (1997)

1997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발효와 일진회 사건 등으로 인해 스포츠신문연

재만화에 대한 검찰의 탄압이 있었다. 검찰은 스포츠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작가들을 대거 소환, 불구속 기소하여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만화를 그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면 문제삼지 않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조치에 항의하면서 많은 만화가들이 1997년 8월 한달간 절필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9) <진짜 사나이> (1997. 박산하)

1997년 7월, 서울문화사에서 펴내는 정기간행물에 <진짜 사나이>를 그린 작가 박산하씨가 폭력성의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받게 되었다. <진짜 사나이>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친 청소년 만화이나 청소년보호법이 1997년 7월 1일 발효되면서 만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혐의를 받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0) <천국의 신화> (1997. 이현세)

서울지검은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에 대해 음란문서 제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1997년 7월 소환, 조사하였다.

당시 <천국의 신화>는 처음부터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구분해 2개의 판본으로 출판되었으나, 검찰은 성인용으로 나온 <천국의 신화>에 대해 "비록 성인용이라고 하더라도 음란·폭력수준이 지나친 만화를 시중에 유통시켜 만화 주요 구독층인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소환 이유를 밝혔다.

이후 작가 이현세는 <천국의 신화>에서 수간, 집단강간 등 지나치게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묘사로 청소년들에게 음란성과 잔인성을 조장한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998년 6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후 2001년 6월 서울지법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음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무죄 선고 이후 <천국의 신화> 완전보존판이 출간되고 있다.

(3) 음악

1) 조명암 곡 등 월북작가들의 곡 금지곡 처분

1962년 6월에 발족한 방송윤리위원회에서 월북작가들의 음악들을 금지곡으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으로 월북작가 조명암의 곡은 모두 금지곡 처분되었으며 그중 <가로

황혼>이 건국이후 최초의 금지곡 지정으로 기록되었다.

2) 이미지 씨 <동백아가씨>

이미지 씨의 <동백아가씨> 등이 방송윤리위원회 산하 가요자문위원회에서 방송가요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해서 당시 인기 절정의 곡이었던 <동백아가씨>를 일본 색이 짙다는 이유로 방송 금지곡으로 지정하였다.

그 때 함께 방송 금지곡으로 지정된 곡이 116곡에 달하며 사유는 대부분 '표절, 가사 저속, 왜색' 등이었다.

3) 한대수-2집 앨범<고무신> 판금 조치

68년 한 대수의 등장으로 우리 가요사에 포크 음악의 처음을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그의 음악은 당시 우리 가요판의 새바람이었다. 하지만, 포크 음악의 그 특성상 사회 비판적인 가사내용 등으로 정부 당국의 검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 대수의 2집 앨범 <고무신>은 수록 곡 중에서 체제 전복적인 노래를 수록하였다고 하여 판금 조치를 당하고 앨범 마스터 자체가 소각되는 등의 조치로 한 대수는 한국에서의 음악활동을 포기하고 다시 미국으로 떠난다.

4) 박정희 유신 시대 가요 대 탄압

1975년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9호를 발표하고 정부당국의 공연활동의 정화대책을 발표한다. 이 정화대책은 모든 공연예술의 심의를 강화한다는 기조아래 대중음악에 대한 대대적인 재심의 칼바람을 휘두른다. 유신정권은 '국가안보와 국민총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외래풍조의 무분별한 도입과 모방', '패배, 자학, 비판적인 내용', '선정, 퇴폐적인 것' 등을 이유로 이미 나와있던 음반까지 재심하여 폐기처분하기에 이른다. 당시의 조치로 1975년에 국내 가요 225곡, 국외곡 261곡이 금지곡 처분이 되고 1986년까지 국내에서 금지된 국내외 가요는 총 2,139곡으로 추산된다. (8군 쇼에서 랩까지-선성원 著 87쪽 참조)

이중에는 김민기의 '아침이슬', 신중현의 '미인' 등 우리 가요사에 빛나는 주옥같은 곡들이 발매 금지조치를 당하게 된다. 금지 사유를 보더라도 김민기의 아침이슬(이 노래는 금지사유가 없는 단지 학생들이 데모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 금지), 이장희의 그건 너(그건 너 너 때문이야 라는 구절을 문제 삼아 금지), 신중현의 미인(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의 구절과 대마초 가수라고 금지) 등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수많은 곡들이 금지처분을 받게 되었다.

5) 정태춘 씨 <시인의 마을>

“〈시인의 마을〉 1편은 오리지널 시의 확인을 위해 심의 보류된 작품이나, 확인 결과 시작(詩作)으로 추측됨-편집자)과 연결 없는 대중가요 가사로는 방향, 불건전한 요소가 짙어 부적절하다고 사료됨으로 전면 개작 요망함”이라는 내용의 공론 심의를 받고 가사를 개정하여 음반을 발표하였다. 이후 84년도에 지구레코드사에서 원 가사로 다시 음반을 냈을 때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심의 통과되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가사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공론의 사무착오로 알려지고 있다.

6) 〈사랑하고 싶소〉의 개작 요청

“〈사랑하고 싶소〉는 내용이 너무 직설적이고 통속적임. 3절, “먼 타향으로 떠나고 싶소”는 〈사랑하고 싶소〉라는 제목과 반대일 뿐 아니라 지나치게 방향을 강조하고 있”의 이유로 가사 개작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이 노래는 가사 개정 없이 재심의 통과되어 음반에 수록되었다. 재심의 통과 이유는 당시 함께 재심에 들어갔던 〈시인의 마을〉 등을 공론 요구대로 개작하면서 ‘선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말하자면 몇 편의 작품이 문제가 되었지만 그 중 일부를 공론의 요구대로 개작하는 선에서 흥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 〈독도는 우리 땅〉 방송 금지 처분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추어 당시 유행하던 정광태의 〈독도의 우리 땅〉이 반일감정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방송 금지처분을 받게 된다.

8) 〈인사동〉 외 노래 개작 심의

1987년, 가수 정태춘 씨의 노래 〈인사동〉 외 6곡에 대해 공연윤리위원회는 음반 사전심의 결정으로 개작을 요청했다. 개작요청 사유는 〈인사동〉의 경우, 특정 지역 왜곡, 비하시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적됨. 이에 가수 정태춘 씨는 심의 결과에 불복하고 세 차례의 재심 요청을 한 결과 개작 2편과 통과 1편, 반려 1편의 결과를 받았다.

9) 〈92년 장마 종로에서〉 공윤심의 거부-음반출시

새 음반 《92년 장마, 종로에서》를 발표한 정태춘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사전 심의제도는 사실상 검열이나 마찬가지로”라며 “가수의 자유로운 창작 행위를 가로막는 가요의 사전심의를 즉각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심의에 대한 거부를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음반을 공론의 심의없이 내놓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은 가수 정태춘씨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원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정태춘씨가 “이 법 16조 2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학문 및 예술의 자유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해 심판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문·예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힘.

재판부는 또 “이 법을 어길 때 형벌로 제재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허가를 금지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발표.

10) 서태지와 아이들 〈시대유감〉 방송 금지 처분

공론의 사전 심의에서 〈시대유감〉의 가사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모두를 뒤집어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네... 네 가슴에 맺힌 한을 풀 수 있기를... 오늘이야” 라는 구절들의 가사 수정 지시와 함께 음반 출시 허가가 반려되었다. 서태지와 아이들 측에서는 결국 이 노래를 가사 없이 반주 음악만으로 음반에 실어 출시하였다.

11) 패닉 2집 앨범 수록곡 〈별레〉, 〈마마〉 등 방송 불가 판정

가사의 내용이 교사와 부모를 직설적으로 공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KBS·MBC·SBS 등 방송3사 측은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12) 윤도현 〈이땅에 살기 위하여〉 방송 불가 판정

MBC 가요심의위원회는 윤도현의 2집 앨범 가운데 ‘민중시인’ 박노해씨의 시를 노래말로 한 ‘이땅에 살기 위하여’의 가사가 생경한데다 직설적이라는 이유로 방송금지판정을 내렸다. 위 위원회는 〈이땅에.....〉의 가사가 지나치게 선동적이어서 시청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3) 유승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인트로〉 등 가요 부적합 판정

공연예술진흥협의회(이하 공진협)가 ‘픽’ ‘머더피커’ 등 영어욕설을 삽입

한 유승준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와 <인트로>에 첫 가요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같은 판정은 가요의 사전심의 제 폐지 이후 공을 대신 출범한 공진협이 사후심의로서 검열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요부적합 판정을 받은 음악에 대해서는 이를 제작한 음반사가 이를 회수해 폐기하든지, 문제내용을 바꿔서 내야 한다. 이후 위 곡을 제작한 서울음반사는 위 음반을 전량 회수되어 클린 버전을 다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14) 양현석 앨범 <무사>, <악마의 연기> 등 방송 부적격 판정

KBS 가요심의위원회는 양현석의 <무사> <악마의 연기> <악한자가 패배하는 세상> <카메라 액션> 등 4곡에 대해 가사가 과격하다는 이유로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무사'는 우물 안 저 개구리 녀석들 피문은 도마 위에 다시 칼날을 가네/ 찢어진 날개로 날아간 저 새에게 왜 또 돌을 던져...' 등으로 언론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핵으로 인한 파괴, 오염을 비판한 노래인 '악마의 연기'는 재심의까지 거쳤으나 역시 방송금지 판정을 받았다.

KBS 가요심의위원회는 "4 곡의 노래 가사가 모두 과격하고 주제의식과도 동떨어진 내용이 많다"며 "가사 수정이 없는 한 재심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5) 조PD <조피디 인 스타덤>의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음반 판정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조피디(조PD)'의 음반 <스타덤(stardom)>에 수록된 '브레이크 프리(Break Free)'의 가사가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청소년 유해매체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공연예술진흥협의회는 위 음반에 대해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림으로써 조피디의 <스타덤>은 국내 처음으로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음반이 됐다.

공진협의 이같은 결정은 위 곡의 가사에 남성성기를 상징하는 비속어가 들어 있고 청소년 선도의지를 부정적으로 폄하했다는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6) DJ DOC 5집 앨범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처분, 방송 부적격 판정

5집에 들어 있는 <Lie>와 <포돌이>의 가사가 경찰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무차별한 비방을 담고 있다고 하여 경찰 간부는 'DJ DOC' 멤버 이근배씨(예명 이하늘)와 앨범 제작회사인 ㈜새한을 상대로 음반배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남녀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와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디제이

터 음반에 대해 청소년 판매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5집 앨범 <The Life...Doc Blues 5%>가 '연소자 이용불가 음반' 판정을 내리고 방송 3사의 가요심의 위원회는 위 앨범의 모든 노래를 방송 금지 처분을 내렸다.

17) 지누션 3집 앨범 KBS 방송 금지 처분

'지누션' 3집 앨범의 경우 KBS는 '빙빙빙' 한 곡을 제외한 전 곡에 대해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 심의실측은 "대부분의 노래가 인종차별적인 용어를 쓰는 등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이유를 밝혔다.

18) 싸이 1집 앨범 <싸이 프롬 더 싸이코 월드> 연소자 이용불가 판정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로부터 싸이의 1집 앨범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후심의를 통해 이런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싸이(24.본명 박재상)의 1집 앨범 <싸이 프롬 더 싸이코 월드>가 발매 4개월 여만에 연소자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음반제작사인 예당엔터테인먼트는 이미 발매되어 도.소매상에 깔려 있는 위 앨범을 회수해 '연소자(만 18살 미만) 이용 불가'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도록 통보를 받았다.

위 앨범이 심의에서 문제가 된 점은 남성 성기와 콘돔 등 재킷에 담긴 성적 이미지와 성관계를 의미하는 선정적 가사 등이다.

또한 위 앨범에 수록된 20곡 중 16곡(KBS), 13곡(MBC, SBS)이 무더기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불가 판정의 이유는 염기적이고 지나친 성적 표현이 지적되었다.

19) 하리수 데뷔앨범 <템프레이션> 방송 불가 판정

하리수의 <템프레이션>에 대해 MBC 심의에서 '노래가사가 성적인 유혹이 강하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림.

(4)문학

1) 남정현 <분지>(1965년)

1965년 현대문학 3월호에 발표한 <분지>가 본인도 모르게 북한의 잡지에 게재되자, 작가는 반공법 4조(고무, 동조, 찬양) 위반 죄목으로 구속되었다가 1967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 후 1974년 4월 긴급조치 위반으로 재구속되었다가 긴급조치 해제로 석방된다.

〈분지〉 사건이 일어난 65년은 5·16 쿠데타 이후 북풍한설이 몰아친 한 해였으며, 그 격랑은 이 나라 역사의 한복판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일협정 반대 투쟁, 월남 파병, 반정부 쿠데타 음모, 박 대통령의 방미, 조기 방학, 위수령 발동, 공화당내 항명 파동 등 정권의 운명이 걸려 있는 대사건의 연속이었다. 이처럼 험악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분지 사건은 세인을 경악케 했으며 타임지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5·16 후 최초의 필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금서로 묶여 있던 이 책은 1987년 10월에야 출판된다.

2) 염재만 소설 '반로' 음란물 논쟁(1970년/1975년)

검찰은 소설 반로가 변태적인 남녀가 동거하면서 노골적이고도 구체적인 성교 장면 등을 묘사해 성욕을 자극시키는 등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작가 염재만을 형법상 음란물제작 및 배포죄 기소했다.

법원도 음란판결을 내렸다. 서울형사지법 박병옥(朴炳玉)판사는 70년6월11일 작가에게 벌금 3만원을 선고했으며 이에 작가는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염재만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다시금 상고했으나 이후 대법원 제3부는 71년 8월 31일 부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환송했다.

그러나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는 73년11월6일 염재만씨에게 대법원 판결취지와 달리 무죄를 선고했으며 그 이유로 재판부는 "문학작품의 문란성여부는 그 작품중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논할 수 없다"면서 "이 소설은 음란성이 없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 제2부 75년12월9일 무죄를 선고한 언심을 확정시켜 반로는 음란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판단이 났다.

3)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1991년-1995년)

1991년 즐거운 사라 출간 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제재로 출판사가 자진 수거 및 절판조치를 취했다. 이후 1992년 『즐거운 사라』 개정 출판되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검찰은 92년 9월 '즐거운 사라'를 통해 변태적인 성행위와 혼음, 동성연애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 건전한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을 해쳤다는 혐의(형법 234조(음화반포), 224조(음화제조), 미성년자보호법) 등으로 구속되기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당하기도 한다.

이후 1992년 12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으나 이후 대법원은 95년 6월 마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정하면서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침해하고 타락시킨 음란물까지 허용될 수 없다"며 문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외설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4) '한국사회의 이해' 보안법위반(1994년)

경상대 교양과목 교재인 '한국 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동조 및 이적표현물의 제작 소지 반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은 창원지법 형사 3부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교수 등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구형됐다.

5) 장정일 『거짓말』 음란물 논란(1997년)

장정일의 네 번째 장편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을 두고 외설논란이 일기 시작한다.

당시 프랑스에 체류중이었던 장씨의 소설은 출간되기전부터 출판사 내부에서 자체 심의, 혹은 출판 평가 비슷한 준비작업이 이뤄졌으며 출간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에 음란물로 조처 출판사에 의해 『내게 거짓말을 해봐』 장정일 소설을 자진 수거했으나 검찰은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 간행물위원회의 음란물,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한다.

재판부는 장정일에게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집필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장정일은 2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한국 역사상 "음란 외설물"이라는 혐의로 감옥에 간 첫 번째 작가였다.

현재 장정일의 4번째 소설집은 절판된 상태이며 현재 대구 자택에 머물고 있는 장정일은 가끔씩 서울에 지기들을 만나기 위해 올라오곤 한다. 몇몇 매체에 산발적으로 '독서일기'를 발표하기는 하지만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는 않는다. '거짓말' 사태 이후 장정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예전만 못하다.

6) '나는야 통일1세대' 이장희교수 이적성 논란(1997-2000년)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를 집필한 한국외국어대 이장희(51)교수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26일 로 불구속기소된 이 교수와 천재출판사 전 직원 김지화(30.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97년 12월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뒤 불구속 기소됐으나 2000년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이 책은 판매금지된다.

7) 조정래의 <태백산맥>(1994년-1999년)

1994년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와 대한파월유공전우회 등 8개 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및 명예훼손죄혐의로 작가를 경찰에 고소- 고발하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경찰은 당시 「태백산맥」이 ▲이승만 정부를 친미괴뢰정부로 묘사하고 ▲여순사건을 미화한 점 등이 이적성을 띤 것으로 인정된다며 조씨를 불구속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동안 판단을 미뤘었다. 그동안 경찰은 지금까지 소설 태백산맥 내용에 대한 학계 및 평론가들의 견해 등을 수집하고 전남 벌교 등지의 증언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후 조정래의 '태백산맥' 이 이적 표현물에 속한다며 불구속 조사를 벌였으며 이에 작가는 자진 출두해 소환조사에 응한다.

(5) 미술

1) 신학철의 <모내기>(1989년 진행 중)

1989년 신학철의 모내기를 지역의 청년단체가 부채에 인쇄하면서 검찰에 기소, 당시 인쇄소 주인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신학철의 모내기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 이적 표현물에 해당된다며 기소했다. 또한 당시 검찰은 신학철의 모내기뿐 아니라 작품 4개와 부채, 달력을 압수했으며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나게 된다.

1992년 서울형사지법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2차 심의까지 무죄판결이 났으나 1999년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로 '모내기'는 이적표현물이라는 판정을 하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학철의 모내기와 당시 함께 압류됐던 달력 또한 압수조치를 받는다. 이에 신학철은 유엔인권위원회에 '모내기'에 대한 판결을 항소했으며 2000년 유엔인권위원회는 법원에 신학철의 '모내기' 파기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이에 대한 답변 유보로 현재 계류중이다.

2) 홍성담의 <민족해방운동사>(1989년)

1989년 6월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제에 민족해방운동사라는 대형 걸개그림을 슬라이드로 제작 미국민족학교를 통해 북에 보낸 혐의로 서독의 북한공작원과 접촉, 간첩행위를 하고 평양축전에 민중을 소재로 한 대형 걸개그림을 그려 보낸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된다.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 고무죄 및 형법상으로 간첩죄가 적용돼 구속기소된 작가는 1심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 고무죄 및 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돼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을 구형 받았으나 형법상 간첩죄를 제외한 찬양, 고무죄가 인정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된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이 민족해방운동사 라는 걸개그림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 평측미술전람회에 전시케한것은 헌법에 보장된 예술-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단하에 내려진 결론이다. 이어 전주교도소에서 3년간의 수감생활을 했다.

3) 안성금(2001)

갤러리 사바나가 준비중이던 '노컷전'에 출품한 안성금씨의 <아 한반도> 라는 작품의 도록을 해당 경찰청인 종로경찰청에서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며 전시장소 불허조치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당시 계획상으로 거리에 설치 예정이었던 작가의 작품은 전시실에 설치되었으며 문제는 해당경찰서 관계자의 사죄로 일단락지어졌으나 작품의 전시장소 변경으로 인한 작품전시 과정의 변형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4) 박불뚱 갤러리 사바나 노컷전(2001)

갤러리 사바나에서 전시 준비중이던 '노컷전' 중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작품화한 것이

문제가 돼 해당경찰청인 종로경찰서가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죄를 들고 협박을 시작한다. 전시를 준비중이던 작가는 전시 개막 몇일전 작품의 기본 컨셉을 사진에서 유화로 변경하여 전시하게 된다. 해당 경찰청의 협박으로 이뤄진 작품의 수정과정을 통해 당초 예상했던 작품의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 최경태<여고생>

갤러리 사바나에서 전시 준비중이었던 '노컷전' 중 <여고생>이라는 제목과 교복을 입은 여성의 성기가 그려진 최경태의 그림 <여고생>이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했다는 종로경찰서의 지적에 의해 <여고생>이었던 작품의 이름을 변경 전시한다.

5) 김인규 <홈페이지>(2001)

김인규 (비인중학교 교사이자 미술가)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 부부의 나체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당시 학부모 및 작가는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보통신에관한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 다며 해당 홈페이지의 회선 회사인 한국통신에 홈페이지 삭제요청을 했고 한국통신을 이를 받아들여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자동 폐쇄시켰으며 이후 김인규씨는 검찰에 구속된다. 이후 검찰에 의해 해당 작가의 작품은 음란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고 해당 검찰에 소송을 파기시킨다. 2차례 이은 검찰의 조사를 끝으로 김인규 씨는 무죄판결을 받게 되나 해당 교육청에 의해 직위해제 당한다. 이에 작가는 상소 준비중이다.

문제가 된 작품은 작자가 정통윤의 청소년 유해매체 고시 명령을 받았으나 삭제했다.

(6)연극

1) 연극 <로리타>(1999년)

여고생의 알몸연기로 논란을 일으켰던 연극 <로리타>를 두고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연출자 등 연극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힘으로써 문제가 일어난다. 연극 '로리타'는 공연기간 보다 일찍 막을 내렸으며 청소년보호위는 "연극 '로리타' 에서 여고 2년생인 임모(17)양이 알몸으로 2분여 간 성행위를 연기한 장면과 관련,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음란행위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연극관계자들을 형사처벌했다.

2) 연극 <미란다>(1994)

연극 <미란다>는 검찰에 의해 외설로 규정돼(공연법상 음란물) 재판에 회부됐다. 이때 서울지검 형사 3부는 이 연극의 연출자겸 극단 포스트 대표 최명효씨를 공연음란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당초 예정됐던 여배우는 불처벌하기로 결정됐다.

연극 미란다 기소공방은 연극이나 영화의 음란성을 문제삼아 검찰이 사법처리에 나선 것은 이번 이 처음이었으며 극단 포스트 대표 최명효씨는 구속됐다.

3) 북한 공연극 '피바다' 출연 (1992)

1992년 당시 동국대생 노동우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노동우씨를 구속하게 된다. 당시 검찰은 북한원전소설 『피바다』를 각색해 만든 연극에 조연으로 노동우씨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노동우씨를 구속했으며 법원에서 징역 10월, 자격정지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참고자료

『표현의 자유가 창작에 미치는 영향』 설문문항

1. 설문 문항

1. 인구통계학적 조사

1. 귀하께서 속한 장르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출판예술(문학·만화) 2) 시각예술(미술·사진)
- 3) 영상예술(영화·애니메이션) 4) 공연예술(음악·연극·춤)

2. 귀하께서 속한 연령대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이상

3. 귀하의 성별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남 2) 여

4. 귀하의 예술활동 기간(창작기간)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5년 이하 2) 5년 이상 3) 10년 이상 4) 20년 이상

2. 일반사항

1. 예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순서대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 1) 표현의 자유 보장 등 민주적 사회분위기 조성()
- 2) 예술가들의 안정된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지원()
- 3) 시민들의 예술 활동 향유 및 접근권 확대()
- 4) 예술교육 환경의 조건 향상()

2. 예술의 발전에 있어 표현의 자유는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중요하다 2) 중요하다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4) 중요하지 않다

*아래 3~11번까지는 아래 법률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1) 국가보안법 2) 청소년보호법
- 3)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 4) 영화진흥법
-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6) 전기통신사업법
- 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9) 학교보건법 10) 형법 제243조, 제244조

3. 위 법률 중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하시는 법률에 중요도 순으로 3개까지 답하여주시길 바랍니다. _____

4. 위 법률 중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장 많이 침해할 소지를 갖고 있는 법률에 대해 3개까지 중요도 순으로 답하여주시길 바랍니다. _____

5. 귀하께서는 작품 창작과 유통시 위 법률에 저촉된 적이 있으십니까?

- 1) 0번 2) 1번 3) 2번 4) 3번 이상(회수를 적어주십시오. _____)

* 6, 7, 8번은 법률에 저촉된 적이 있으신 분만 표기하여 주십시오

6. 창작행위와 관련하여 위 법률 중 어떤 법률에 저촉되었습니까? 법률을 표기하여 주십시오.(중복표기 가능) _____

7.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어떤 제재를 받으셨습니까?

- 1) 징역 2) 집행유예 3) 기소유예 처분 4) 조사 후 훈방

8. 위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창작물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 1) 작품 몰수 2) 작품 유통 금지 3) 작품에 대한 훼손 4) 기타 제재

9. 공권력에 의한 제재 이외에 창작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예 (구체적으로 명기, Ex : 특정집단에 의한 협박 등) _____
- 2) 아니오

10. 귀하는 작품 창작시 위 법률 등의 지촉 여부를 고려해 작품 기획을 재조정
한 적이 있습니까(자기검열 여부)? 1) 예 2) 아니오

※ 11번은 위 10번에 “예”라고 답한 분만 표기하여 주십시오

11. 그렇다면 창작 시 영향을 받는 법령은 주로 무엇입니까? _____

12. 현행 법률들은 청소년의 연령에 대해 청소년기본법은 9세이상 24세이하, 청
소년보호법은 만19세 미만, 유해매체 규제기준 연령에 대해 영화진흥법은 만18
세 미만 그리고 선거법은 만20세 이상인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에 대해 모두 제각각인 연령기준을 단일화한다면 귀하께서는 몇
세까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만18세 미만 2) 만19세 미만
3) 만20세 미만 4) 만24세 미만 5) 기타 _____

3. 국가보안법에 대한 질문

1.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의 순기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반국가활동을 통제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
2) 국민의 생존 및 자유 보장
3) 사회의 안정화
4) 순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 1)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도모
2) 사회전반의 이데올로기 통제 수단
3) 정권안보 및 정권유지의 도구
4) 기타 _____

3. 위 법 2조에서 규정하는 ‘반국가단체’ 및 7조 ‘반국가활동’ 혐의로 인해 통일

및 사회개혁 활동은 이제까지 자주 통제되어 왔습니다. 1980년에서 1987년까지
국가보안법 피소자 1,565명 중 7조 피소자는 1,495명으로 전체 95.5%에 이릅
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도 전체 국가보안법 피소자 중 7조 피소자는
90%를 넘을 정도로 7조는 국가보안법의 핵심적인 조항이며, 특히 7조 5항은 예
술인에게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국가보안법 적용이 국가안전을 명분으
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4. 귀하는 국가보안법 중 표현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2조 ‘반국가단체’ 정의의 모호함
3) 7조 1항의 찬양·고무 / 3항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 7조 5항의 이적표현
물 제작 등의 죄(3번을 택하실 시 동그라미로 조항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4) 법조항 전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5. 귀하는 국가보안법 개정 논란과 관련하여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 1) 전면 철폐
2) 2조, 7조, 10조 등 부분 개정
3)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핵심적인 조항인 7조 등 일부 개정
4) 현행 유지

6. 국가보안법 폐쇄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아직 이렇다할 변화가 없습
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반국가단체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 보수세력을 의식한 각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3) 국가보안법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 기타 _____

4.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질문

1. 97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나 장소, 물건 등을 고시하여 차단하고 청소년유해매체나 유해장소임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하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절하다 2) 적절하다 3) 적절하지 못하다 4)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 아래 2번은 1번 문항 중 “3), 4)”에 대답하신 분들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2. 청소년보호법에서의 매체 규제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청소년보호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
2) 유해매체 심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
3) 심의기준은 문제없지만, 심의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
4) 기존 매체심의기관(간행물윤리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으로 충분히 심의할 수 있기 때문

3. 다음은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입니다. 귀하께서 보시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은 어떤 것입니까?(2개이상 가능 _____)

-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적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 청소년보호법의 심의기준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 1) 심의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다
2) 심의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3) 음란물만이 아니라 사회비판적 내용도 규제하고 있다

4) 성인규제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5.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별심의 기준입니다. 귀하께서 보시기에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조항은 어떤 것입니까?(중복 답변가능)

- 1)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2)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3)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괴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5)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6) 잔인한 살인, 폭행, 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7)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 기타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8)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9)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10) 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11)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12)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6. 청소년보호법 8조 2항에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당해 매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차 검열기관으로 기능할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1) 예 2) 아니오

7. 귀하께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보호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지 않다

8. 귀하께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어떻게 유지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
- 2) 심의기준들 일부를 수정하여 유지해야 한다
- 3)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4) 법의 명칭이 청소년과 무관한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야 한다

5. 영화진흥법에 관한 질문(영상예술에 속한 창작자만 대답해주시오)

1. 현재 계류돼 있는 영화진흥법은 등급분류를 완전등급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화내용이 타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경우 등급분류를 아니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어 사실상 등급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등급분류 보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현행 등급보류제도는 정당하다
- 2) 현행 등급보류제도는 필요하나 보류기준 등에 있어 보완은 필요하다
- 3) 어떠한 등급보류도 허용되지 않는 완전등급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 4) 기타 _____

* 2번은 1번의 '2), 3)'에 답하신 분만 표기하여 주십시오

2. 다음은 영화진흥법 21조에서 밝히고 있는 등급분류 보류 기준입니다. 이중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조항은 무엇입니까?(중복답변 가능)

-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 2) 폭력, 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 3)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4) 기타 _____

* 3번부터 4번까지는 완전등급제에 찬성하는 분만 답하여주시시오

3. 완전등급제가 시행되어 제한상영관이 도입되더라도 제한상영가 등급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그 분류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 이상
- 2)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래피 이상
- 3)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폭력성을 자극하는 작품
- 4) 기타 _____

4. 제한상영가 등급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 성적 표현뿐만 아니라 폭력적 표현에 대한 기준도 등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한국 사회에서 성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폭력적인 표현이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
- 2) 아니다(성적 문제에 비해서 폭력은 좀 더 느그롭게 용인할 수 있다)

5. 완전등급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상도 제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현행 위상이 적절하다
- 2) 현행 위상이 적절하지만 등급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 3) 미국의 영화분류및등급협회(CARA)처럼 완전민간자율기구로 개편해야 한다
- 4) 기타 _____

6.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 관한 질문(영상예술 및 음악에 속한 창작자만 대답해 주십시오)

1. 음반, 비디오, 게임물 그리고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의 심의시 음란성 등의 이유로 음비게법 18조에 의해 등급분류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 보류의 판정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2. 음악관련 시민단체는 음비계법 제18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완전등급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위법 시행령 32조에 따르면 게임제공업 또는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PC방) 설립시 음란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수요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 2) 청소년보호를 위해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는 정당하다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질문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 23조 2항은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해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국가의 검열행위이다
- 2) 검열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 3)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더라도 청소년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4) 아무 문제가 없는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2. 당신이 만약 자신의 나체사진을 예술적 동기에 의해 홈페이지 올리게 된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 23조 2항(2번 설문 참조)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에 근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 3번은 위 2번의 아니오에 대답하신 분만 답해주십시오

3.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현의 자유 침해 백서

2001년 10월 24일 발행

펴낸 곳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서울 종로구 낙원동 280-4 건국1호빌딩 5층
www.kpaf.org
kpaf@kpaf.org
tel. 82-2-739-6851
fax. 82-2-739-6853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서울 종로구 화동 138-8
www.cncr.or.kr
speak21@chollian.net
tel. 82-2-773-7707
fax. 82-2-737-3837

후원한 곳 한국문화예술진흥원